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 : 충북 PRIDE 공유대학 바이오 공동교육과정 개편

(기존 바이오융합학과 단일 학과 체계를 바이오융합학과(가칭), 바이오웰니스학과(가칭) 의 2개 학과 체계로 개편)

나. 예산액 : 55,000,000원/VAT포함

다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27일 이내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와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제27조 제2항 제2호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	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27조 제2항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**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**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**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	1.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**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**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5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○ 본 사업은 충북 PRIDE 공유대학 바이오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시일이 촉박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.

다. 긴급입찰 사유 상세

○ 본 사업은 충북 PRIDE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개편을 학교, 기업,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참여대학의 공유대학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

- 충북 PRIDE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은 참여대학의 의견수렴 및 바이오산업분야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므로 빠른 시일안에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
- 공유대학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제공하기 위해 **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긴급입찰로 추진함**